

202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귀중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사무이사 다케다 야스하루(武田泰治)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귀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일본지적재산협회는 1938년 일본에 설립된 지적재산권 관련 비영리, 비정부 사용자 단체로서 일본의 주요 기업 약 970사를 포함하여 1,332개사(2021년 2월 1일 기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지적재산제도와 운용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해 하기와 같이 저희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 기

제 4 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 AI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 활동 및 데이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관련 규칙·제도의 정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규칙·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데이터는 유통과 이용·활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산업, 경제 활동을 발전시키므로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여 데이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제도의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질서 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보호 또는 권리 부여는 오히려 유통과 이용·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 제2조 제6호 다목은 동조 동호 가목 또는 나목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전득자(轉得者)의 데이터 취득·사용·공개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무상에서 전득자가 데이터를 입수할 때 데이터 입수경로의 확인을

통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확인 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실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전득자의 취득·사용·공개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면, 이번 개정은 이용·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해주셨다고 사료됩니다만, 『보호할 데이터』로 삼기 위한 요건(예를 들어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제공’, ‘상당량이 축적·관리’ 등)의 해석이나 『보호할 데이터』에 필요한 관리 방법 등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실시하는 기업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의 제시는 개정법을 활용한 산업,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하므로 가이드라인 등의 형식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동(同) 가이드라인은 한국어 외에 영어 등으로 제시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사무국장 시무라 이사무(志村勇)
연락 담당: 후루야 마호(古谷真帆)
TEL: 81-3-5205-3433
FAX: 81-3-5205-3391
Email: furuya@jipa.or.jp